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가합545278 판결 [계약금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20104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가합545278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김병진, 정나영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박용범

변론 종결 2020. 1. 17.

판결 선고 2020.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2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숙박시설 운영업 등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2017. 11. 1.부터 2018. 4.30.까지를 사업기간(이하 '이 사건 사업기간'이라 한다)으로 하여 C 및 D의 시설경비,보안검색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위한 보안안전용역을 수행한 업체이다.

나. 숙박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7. 9.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피고의 안전요원들에 대한 숙박시설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된 최초 객실 소요 예상분(70,865명)에대한 계약대금을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E위원회 지시에 따른 근무자 증감 발생 시 추가 및 감소되는 인원내 대하여 1인당 20,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그 중 50%인 750,000,000원을 선금금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숙박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7. 12. 29.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숙박계약 중 선금금 부분을 1,25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계약의 선금금으로 2017. 9. 29. 300,000,000원, 2017. 10. 11. 30,000,000원, 2017. 10. 12. 495,000,000원, 2017. 12. 29. 550,000,000원등 합계 1,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급식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7. 11.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피고의 안전요원들에 대한 급식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입예정인원 72,000명, 1명당 1일 2식(총 144,000식), 1급식당 7,000원, 총금액 1,0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E위원회결정에 따라 식수인원 증감사유 발생 시 식비를 증감 정산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급식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7.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급식계약 당시 약정한 계약금으로 55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통근버스 운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임직원 등 관계 인원의 수송을 위하여 2017. 10. 17.부터 2018. 4. 30.까지 기간 동안 통근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준인원 72,000명, 1인당 5,000원, 총금액 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근버스 운행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통근버스 운행계약 당시 약정한 계약금으로 7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계약 해지 통지

1) 피고는 2018. 3. 26.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급식계약에 기하여 기지급한 계약금 중 원고의 급식 미제공분(제공된 16,043식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430,868,900원 및 이 사건 통근버스 운행계약에 의하여 기지급한 계약금전액인 79,200,000원을 2018. 3. 30.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8. 4. 27.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숙박계약, 급식계약 및 통근버스 운행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는 물론 계약금 및 선급금이 회수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위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0내지 14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계약에 서 정한 계약대금 중 미지급대금인 250,000,000원(= 1,500,000,000원 - 1,2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급식계약에서 정한 계약대금 중 미지급대금인 504,000,000원(= 1,008,000,000원 - 50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7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82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숙박계약 및 급식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그 종료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숙박계약 및 급식계약에 따른 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대금 7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내지 18호증, 갑나 제1호증, 갑나 제2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숙박계약의 이행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숙박계약 전후로 숙박시설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 1. 21.부터 비로소 피고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였는데, 그마저 숙박시설 내에 설치 약정한 2층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된 침대에 고정불량 등의 하자가 있기도 하였고, 숙박시설의 공간이 협소하여 예정 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거나 개인용품 등을 보관할 장소 내지 시설이 없기도 하였으며, 동절기임에도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녹물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안전요원들 중 42,905명만이 2018. 1. 21.부터 2018. 3. 31.까지의기간 동안 원고의 숙박시설에 투숙할 수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숙박시설에 투숙하지못한 안전요원들을 위하여 다른 대체 숙박시설을 마련하여야 하였다.

2) 이 사건 급식계약 이행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9.부터 2018. 2. 4.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안전요원들에 게 급식을 제공하였다.

나) 그런데 2018. 1. 말경 원고의 시설 내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여 피고의 안전요원들이 질병관리본부의 지시 등에 따라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2. 5.자로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에 따라 급식시설을 폐쇄한 이후로 계약기간 동안 계속 피고에게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급식수량은 16,043식이었다.

다) 질병관리본부는 원고의 시설 내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 의하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의 집단발생 원인은 단체급식으로 추정되고, 조리용 물을 통한 오염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위와 같이 추정하는 이유에 관하여 급식을 먹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에 비하여 노로바이러스 발생 위험이 6.5배 높고, 피고의 시설에 거주하지 않고 식사만하고 돌아간 사람 중에서도 감염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조리용 물에서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조리용 물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숙박계약의 종료 및 피고의 미지급대금

가)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숙박계약에 따른 숙박시설 제공의무 등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예정된 피고의 숙박인원을 수용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는 그 내용상 정하여진 시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기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사전에 원고에게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숙박계약은 피고의 2018. 4.27.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숙박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943,910,000원(= 숙박인원 42,905명 × 이 사건 숙박계약상 정산기준으로 정하여진 2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위 943,910,000원을 초과하는 1,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숙박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숙박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스스로 노로바이러스의 발생 등을 문제삼으며 원고의 숙박시설에 입소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숙박계약은 피고숙박인원의 규모, 급식계약과 버스운행계약까지 함께 체결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원래 책정하여 둔 숙박료 1인당 50,000원보다 저렴하게 20,000원으로 적용하였던것인데, 원고에게 귀책사유 없는 노로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숙박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던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계약에서 정한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숙박계약에서 정한 기간중에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하였던 점이 원고가 피고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숙박계약은 노로바이러스의 발생이 아니라 숙박시설의 미비와 하자 등 시설제공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급식계약의 종료 및 피고의 미지급대금

가)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제공의 급식을 이용한 사람들 중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급식시설을 2018. 2. 5.자로 폐쇄하고 이 사건 급식계약상납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급식계약은 2018. 2.5.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2018. 3. 26.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급식 미제공분에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급식계약의 종료를 위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급식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2018. 3. 26.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급식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123,531,100원(= 제공된 급식수량 16,043식 × 1급식당 가격 7,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위 123,531,100원을 초과하는 55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급식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로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급식계약에 따른 급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원고에게 노로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도 역시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의 원칙에 따라 급식제공의무의 채무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급식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G일자부터 H일자까지 D 기간 동안 많은 식사인원을 보냄으로써 원고가 2018. 2. 4.부터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만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의 급식시설은 2018. 2. 4.부터 일시적으로 그 이용이 불가능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급식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의 급식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법원의 평창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28.경 평창군청으로부터 급식재개를 통보하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문을 알렸다거나, 이를 알리면서 급식제공이 가능하여졌음을 고지또는 급식재개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한편 원고는, 2018. 2. 중순경 평창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재개를 유선으로 통보받고 피고의 직원에게 이를 알렸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에 따라 원고의 급식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피고가 그 이용을 재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대금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혜정, 판사 정치훈, 판사 최동환